#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선 | 기 관 의 장 |
|---|---|
| 람 | |

# 공 보

제915호 2015년 1월 16일(금)

## 공 고

○ 공시송달 공고 ····· 2
○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 2015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자 모집 공고 ····· 19

| 회 람 |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공고 제 2015 - 43호

# 공시송달 공고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현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1. 16. ~ 2015. 01. 30.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 | |
|---|---|---|
| 가. 처분제목 | | 건축신고 효력상실 |
| 나. 대상자 | 성 명 | 하명철(570316-1******), 이필용(570807-5******) |
| | 대지위치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48-72번지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 미착수 |
| 라. 처분근거 | | 건축법 제14조제3항 |

4. 기타사항

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3-639-2769】

2015. 01. 16.

# 속 초 시 장

속초시 공고 2015-52호

##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등 관계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 속 초 시 장

1. 제 명 :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2014. 1. 7. 시행 2014. 7. 8),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강원도조례 제3709호)

○ 주민부담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을 인하하고,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각 조항의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용어정비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5%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명확화

○ 변상금 징수유예제도 근거 마련(연4%이자, 분할납부 신설)

○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이상의 이자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연 4**퍼센트로 인하**

○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가산금 이자 지급 근거 마련

## 4. 자치법규안 : 붙임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0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17-701 /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 회계과
(전화 : 033-639-2257, FAX : 033-639-2396)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회계과(☎ 033-639-227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할 사항은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제2항 제1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3.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12조 중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을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로 하고 “얻어”를 “받아”로 하고, “편성”을 “의결”로 하고,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4조 중 “서식”을 “작성방법”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부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2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이 조례 제29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③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제목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관리위탁 행정재산)”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고,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한다.

제23조 제목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갱신)”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공용·공공용”을 “행정목적”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가한”을 “불가능한”으로 “산출(이하 같다)”을 “산출”로 한다.

①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공용면적

$$\text{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text{해당 부지면적} \times \frac{\text{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영제16조 및 영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 6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제2호중 “아파트형 공장내의”를 “지식산업센터내의”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1,500제곱미터”를 “2,000제곱미터”로, “1989년 1월 24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소유한”을 “점유·소유한”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을 “점유된 공유지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자가 소유한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제3호의 매각범위 내에서 건물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
7.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9.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
10. 기타 수의에 의한 매각은 영 제38조제1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거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수의매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6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의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 제35조제3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8조의2, 제61조제2항,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대행)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할 사항은**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br>① ~ ② (생 략)<br>1.「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br>2. (생 략)<br>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br>4. ~ 5. (생 략)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br>① ~ ② (현행과 같음)<br>1.「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br>2. (현행과 같음)<br>3.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br>4. ~ 5. (현행과 같음) |
|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br>② (생 략) |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 ---------- ---------- ---------- ------ **받아** ---------- ---------- ---------- ---------- -------- **의결**---------- ------- **받아야** ---.<br>②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 ---------- 작성방법----------. |
|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사용·수익허가)① ---------- ----------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② 영 제12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때 이 조례 제29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
| <신 설> | ③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
| <신 설> | ④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제22조(관리위탁 행정재산) |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② ---------- ----------관리수탁자---------- ----------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받은 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③ ----------**관리수탁자**----------<br>----------<br>----------**관리수탁자**----------<br>----------<br>----------**관리수탁자**----------<br>**관리수탁자**---------- |
|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br>----------<br>**관리수탁자**----------<br>----------<br>---------- |
| ⑤ 일반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⑤ ---------- **관리수탁자**-----<br>----------<br>----------<br>----------<br>----------<br>----------.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br>① ~ ③ (생 략)<br>제29조(대부료의 요율)<br>① ~ ③ (생 략)<br>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br>④ (생 략)<br>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br>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br>③ (생 략) | **제23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갱신)**<br>① ~ ③ (현행과 같음)<br>제29조(대부료의 요율)<br>① ~ ③ (현행과 같음)<br>1. **행정목적**----------<br>------<br>④ (현행과 같음)<br>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br>② ----------<br>----------<br>----------<br>----------<br>---------- **불가능한** ----<br>----------<br>----------<br>**산출**----------<br>---.<br>③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br>※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br>(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건물의 공용면적**<br>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공용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전용면적)<br>**2. 부지의 공용면적**<br>해당 부지면적 ×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영제16조 및 영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br>----------<br>----------<br>----------100분의 5이상<br>----------<br>----------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②<br>(생 략)<br><신 설> |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②<br>(현행과 같음)<br>③ 영 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br>① (생 략)<br>1. ~ 4. (생 략)<br><신 설>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br>① (현행과 같음)<br>1. ~ 4. (현행과 같음)<br>**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삭 제> |
|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 4. (생 략) | ③ ----------<br>----------<br>----------연 4퍼센트<br>----------<br>----------<br>1. ~ 4. (현행과 같음) |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신 설> |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제39조(조성원가 매각)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br>1. 생략<br>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br>3. ~ 4. 생략 | 제39조(조성원가 매각)----------<br>----------<br>----------<br>----------<br>----------<br>----------<br>------.<br>1. 생략<br>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 센터내의** 재산<br>3. ~ 4. (현행과 같음) |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br>----------<br>----------<br>------.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매각 할 수 있다. | 3. ---------- **2,000제곱미터** ---------- **2003년 12월 31일** ---------- **점유·소유한**--------**점유된 공유지를 그** ---------- |
| 가. ~ 나. (생 략) | 가. ~ 나. (현행과 같음) |
| 4.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제3호가목의 매각 범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 | **4.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소유 이외의 자가 소유한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제3호의 매각범위 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 |
| 5. ~ 6. (생 략) | 5. ~ 6. (현행과 같음) |
| <신 설> | **7.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할 수 있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신 설> |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
| <신 설> | 9.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 |
| <신 설> | 10. 기타 수의에 의한 매각은 영 제38조제1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거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수의매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
| ① (생략) | ①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신 설> |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 |

속초시 공고 제2015-55호

# 2015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자 모집 공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01호)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5년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홍보와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5일

## 속 초 시 장

## ❑ 2015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단위 : 천원)

| 사 업 명 | 사업량 | 사업비 | 재원별 | | | | 비 고 |
|---|---|---|---|---|---|---|---|
| | | | 국비 | 도비 | 시비 | 자담 | |
| 계 | **9개사업** | 418,580 | 41,210 | 90,069 | 175,777 | 111,524 | |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1식 | 97,700 | 29,310 | 8,793 | 20,517 | 39,080 | ▫지원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 (면허)종사 어선<br>▫지원단가 : 구명조끼(140천원) 자동소화시스템(1,600천원), 초단파대 무선전화(1,200천원) |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1식 | 17,000 | 11,900 | 1,530 | 3,570 | - | ▫지원대상 : 게자망 및 통발 어선<br>▫지원단가 : 차액지원 [(생분해 - 나일론 + (나일론*10%)]<br>※ 국립수산과학원의 원가계산 결과에 의함 |
| 어선구명장비 지원 | 223점 | 132,200 | - | 39,910 | 65,850 | 26,440 | ▫지원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 (면허)종사 어선<br>▫지원단가 : 구명사다리(400천원) 기능성구명복(300천원), 화재자동경보소화기(4,200천원), 구명뗏목(5,000천원), 소화기(110천원) |
| 중소형 선박 통합 관리시스템 지원 | 8척 | 40,000 | - | 12,000 | 20,000 | 8,000 | ▫지원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 (면허)종사 어선<br>▫지원단가 : 척당 5,000천원<br>※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어선감시 |

| 사 업 명 | 사업량 | 사업비 | 재 원 별 | | | | 비 고 |
|---|---|---|---|---|---|---|---|
| | | | 국비 | 도비 | 시비 | 자담 | |
| 나잠어업인<br>잠수복지원 | 15벌 | 5,250 | - | 1,050 | 2,625 | 1,575 | ▫지원대상 : 나잠 신고어업인<br>▫지원기준 : 1인 1벌 350천원 |
| 해면양식장<br>지원 | 1개소 | 15,000 | - | 4,500 | 7,500 | 3,000 | ▫지원대상 : 양식 어업인<br>▫지원내용 : 양식물 생산, 채취 장비 및 해양오염방지장비 등<br>▫지원단가 : 1인 15,000천원 |
| 오징어채낚기<br>집어등<br>(전구)교체비 지원 | 308개 | 15,400 | - | 3,080 | 7,700 | 4,620 | ▫지원대상 : 연안복합, 근해 채낚기어업 허가자<br>▫지원단가 : 개당 50천원 |
| 채낚기어선<br>냉동팬 지원 | 555개 | 10,000 | - | 2,000 | 5,000 | 3,000 | ▫ 지원대상 : 근해채낚기 허가어선 (냉동설비설치 어선)<br>· 지원단가 : 팬당 18천원 |
| 러시아 입어<br>채낚기 어획보고<br>위성장비 지원 | 13척 | 86,030 | - | 17,206 | 43,015 | 25,809 | ▫지원대상 : 러시아 어장 입어어선<br>▫지원단가 : 대당 6,618천원 |

⇨ 사업신청자가 많아 경합된 경우 개별 사업집행지침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 사업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015. 1. 19. ~ 2015. 2. 23일까지
◦ 신청대상 : 단위사업별 해당자(어업인・업체 및 단체 등)
◦ 신청기관 : 시청(해양수산과), 속초시・대포수협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 수산사업 지원신청서 1부 - 사업 계획서

## ❑ 지원 제외대상

1) 공통사항

◦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어업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
◦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어선검사 의무대상이 아닌어선 제외)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 자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대상어선

2) 사업별 추가사항

◦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교체비 지원 한도**

– 톤급별 차등 지원 : 연안복합 및 근해채낚기(10톤미만) : 550천원
근해채낚기 : 10톤이상~20톤미만(880천원), 20톤이상~70톤미만(1,050천원), 70톤이상(1,150천원)

◦ **채낚기어선 냉동팬 지원 한도**

– 30톤미만(500개), 30톤~60톤(700개), 60톤 이상(900개)

## ❑ 협조사항

◦ 수협에서는 공고문을 다수 어업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수협에서는 세부지침(별도송부)을 숙지하시고 사업신청서 접수

# 수산 사업 신청서

( 오징어 채낚기집어등, 채낚기어선 냉동팬, 러시아어장 입어채낚기 어획보고 위성장비, 어선 구명장비, 중·소형선박 통합관리시스템, 해면양식장 )

## 1. 사 업 명 :

○ 설치어선현황

| 소유자 주소 및 성명 | 선명(업종) 톤급(선질) | 진 수 년월일 | 어업허가 (면허)번호 | 최종어선검사 | | 어선 소유기간 |
|---|---|---|---|---|---|---|
| | | | | 일 자 | 종 류 | |
| | | | | | | |

## 2. 사업계획

○ 장비(기계) 설치계획

| 신청내용 (품목<기종,규격>)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 | | | 예정공기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착공일 | 준공일 | |
| | | | | | | | | | |

○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방법)

위와 같이 2015년도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구비서류) 어선검사증서(사본)

# 사업 신청서

## 1. 사 업 명 : 나잠 어업인 잠수복 지원

○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종사기간 | 비고 |
|---|---|---|---|---|
| | | | | |

## 2. 사업계획

○ 잠수복 구입 계획

| 구입처 (연락처) | 사 업 비(천원) | | | | 구입시기 | 비고 |
|---|---|---|---|---|---|---|
|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 |
| | | | | | | |

○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방법)

**위와 같이 2015년도 나잠 어업인 잠수복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별지 제1호 서식]

# 어선 안전설비 지원 사업신청서

(VHF-DSC, 자동소화장치)

<table>
<tr><td rowspan="5">신<br>청<br>자</td><td>생산자단체 등의<br>명칭</td><td colspan="5"></td></tr>
<tr><td>성 명<br>(대표자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전화번호</td><td>(  )<br>-</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영어종사경력</td><td colspan="5">년</td></tr>
<tr><td>생산자단체<br>등의 형태</td><td colspan="2">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br>기타</td><td>참여 어가수</td><td colspan="2">호</td></tr>
<tr><td rowspan="4">신<br>청<br>내<br>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사업예정지<br>(동 리 번지까지<br>기재)</td><td colspan="2" rowspan="2"></td><td colspan="3">어업면허</td></tr>
<tr><td>종 류</td><td colspan="2">허가번호(허가기관)</td></tr>
<tr><td rowspan="2">사 업 비<br>(천원)</td><td rowspan="2">계</td><td colspan="3">정부지원(재원명 기재)</td><td rowspan="2">지방비<br>(  %)</td><td rowspan="2">자부담<br>(  %)</td></tr>
<tr><td>국고계<br>(  %)</td><td>보 조<br>(  %)</td><td>융 자<br>(  %)</td></tr>
<tr><td colspan="2">사업내용별 규모<br>(량)</td><td colspan="5"></td></tr>
</table>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6조 및 어선 안전설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해양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 1. 현 황 (세부사업명 : )

* 사업별 관련사항만 기재

○ 설치어선(VHF-DSC, 자동소화장치)

| 선명(업종), 톤급(선질) | 진수년월일 |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 최종어선검사 | | 설치 장비명 | 비 고 |
|---|---|---|---|---|---|---|
| | | | 일 자 | 종류 | | |
| | | | | | 품 명 :<br>기 종(규 격)<br>수 량 | |

- 설치어선 소유기간 ( 년 월) :
- 기타 :

## 2. 사업계획

○ 설치기간 및 계획

| 업종(톤급, 선질)<br>품명(기종, 규격 등) | 예정공기 | | 사업내용 | 신청내용 |
|---|---|---|---|---|
| | 착공일 | 준공일 | | |
| | | | | |

* 사업내용은 어선 안전설비를, 신청내용은 VHF-DSC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표시

- 어업인 후계자는 해당 여부 기재 :

○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 (방법) :

○ 기타(사업지원 효과 등)

[별지 제1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

| | | | | | | |
|---|---|---|---|---|---|---|
| 신 청 인 | 성 명 | | 연락처 | | | |
| | 주 소 | | | | | |
| 어업구분 | □ 연안자망어업 □ 근해자망어업<br>□ 연안통발어업 □ 근해통발어업 | | | | | |
| 선박제원 | 선명(허가번호) | | 톤수 | | 승선원수 | |
| 품 명 | 어 구 규 격 | 단 위 | 연간사용량 | 사업신청량 | 비 고 | |
| | | | | | | |
| 변경내용 | 당 초 | | 변 경 | | | |
| | | | | | |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 |
|---|---|
| ※ 구비서류<br>1. 어업 허가증 사본 1부.<br>2. 선적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br>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 수수료<br>없음 |

##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해양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